

제 호

유기시설·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

1. 협회(기관)명:

2. 대표자 성명: (생년월일:)

3. 협회(기관)의 주소:

4. 협회(기관)의 전화번호:

5. 지정기간:

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65조제1항제3호 및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직인